

「2024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협업모델 발굴·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경쟁력 발굴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4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협업모델 육성을 통한 서비스 규모화로 지역사회서비스 경쟁력 제고 및 지역사회에 기여
- (모집기간) 2024. 3. 18.(월) ~ 4. 3.(수) 17:00
- (모집자격) 경기도 소재 ①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주관 컨소시엄 또는 ②(동종·이종)협동조합연합회 단독·(또는)주관 컨소시엄
 - (사회적)협동조합은 단독기업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로만 참여(신청) 가능
 - (동종·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단독 참여 및 컨소시엄 모두 가능
 - 사업의 주관기업은 '기본법 협동조합'만 가능하며, 개별법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참여 가능
 - 컨소시엄 참여의 경우 전체 참여기업 수의 50% 이상이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참여불가 예시)협동조합 2개·마을기업 3개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 참여의 경우에도 중복참여 불가(중복 수혜로 간주)

※ 참고

- ① 기본법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 중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동종·이종)협동조합 연합회
- ② 개별법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기타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 중인 협동조합 및 연합회·중앙회
- ③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모집 내용) 지역 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협업 모델로 성장하고 싶은 협동조합(개별기업X, 컨소시엄 단위 모집)

(예시1) 기술(AI, IT 등)을 활용한 지역 내 장애인 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플랫폼 시스템 구축
 (예시2) 고령화 도시의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효율을 위한 이동차량-노인돌봄 협업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예시3) 고물가 시대, 결식아동 및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분야 협동조합-돌봄 협동조합 간의 협업
 (예시4)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복귀를 위한 교육 협동조합-카페 협동조합 협업을 통한 자립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시5) 지역 아동 돌봄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 제작 협동조합-돌봄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업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발

- (모집 규모) 협업 모델(컨소시엄) 총 4건

- (주요 지원내용)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1. 7.(목)
- 지원항목 및 세부내용: 협동조합 협업모델 구축 사업개발 자금 각 3천만원

* 협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소요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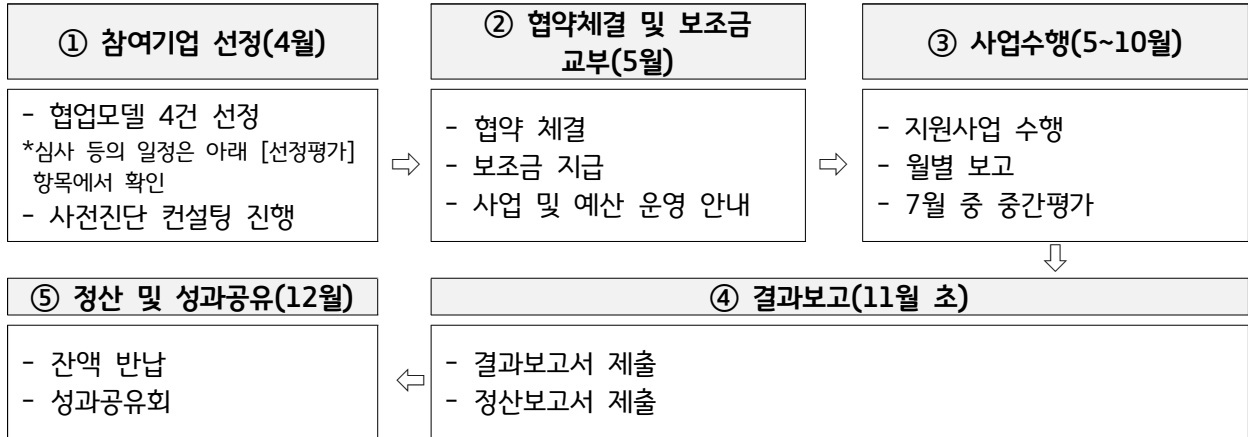
- ※ 인건비 비율 10% 이내
 - 주관 기업 소속(내부인력)에게만 인건비 지급 가능
- ※ 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
- ※ 협약기간 내 수행 가능한 사업계획 제출
- ※ 사업비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 제시
- ※ 부가가치세 미지원(발생 시 자부담), 별도의 자부담 없음

※ 자세한 예산 편성 기준은 '5. 사업예산 분류 및 내용' 참고

- (협업화 지원 상세)

- (사전진단 컨설팅) 컨소시엄 현황에 맞는 지원사업 목표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진단 컨설팅 2회 제공
- (사업개발 자금) 선정된 지원사업 사업계획 기반 사업개발 자금(보조금) 지원
- (외부자원 유치 기회)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공유회(12월)를 통한 외부자원(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 유치의 기회 제공

○ (추진절차)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 > 사업신청

- <https://www.gsic.or.kr/home/kor/M232113179/business/apply/index.do>
- 기한 엄수(지각 제출, 기한 내 필수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제출서류)

제출서류	
순번	항목
①	[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②	[서식 2] 협동조합 현황 각 1부
③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자, 실무자 모두)
④	[서식 4]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⑤	[서식 5]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각 1부
⑥	[서식 6] 사업계획서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1부
⑧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⑨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⑩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2022,2023년)* 각 1부 *2023년 설립기업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 『제출서류 ①~⑥의 경우』 지정된 신청 서식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을 사용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 ⑦~⑧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제출서류 ⑨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제출서류 ②~⑤, ⑦~⑩의 경우』 주관 협의회, 컨소시엄 협의회 모두 각 1부씩 제출 필수
- 서명 및 날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진행하며, 서명 및 날인 누락 시 접수 불가
- ①~②번, ③~⑤, ⑥, ⑦~⑩ 서류를 순서대로 취합하여 PDF 파일로 제출

3. 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자격조건은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내부 관리 기준에 따름
- 사업신청서, 월별 최종결과 및 정산보고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각종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중단환수를 진행할 수 있음
- 월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사용은 중간평가(7월) 전까지 사업비 총액의 최대 50%까지 사용 가능함
- 7월 중 **중간평가 실시**,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중에 따라 사업비 환수조치 또는 **협약해지**를 진행함 ※ 자세한 내용은 ‘10. 사업 중간평가’ 확인
- 사업 중도포기 및 각종 부적합 판단에 따른 환수조치 진행 시 심사 결과에 따른 후순위 기업을 선정하여 협약 체결함
-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체결한 협약서·보조금 관리 기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계획한 사업목표 달성률 및 보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함
- 「2024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의 사전진단 컨설팅, 성과공유회, 보고자료 제출 등에 빠짐없이 성실히 임해야 함
- 기업의 단순 변심 혹은 귀책 사유로 사업 중도포기·중단 및 환수사례 발생 시, 향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업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사업 참여 전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던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추진은 가능하나, 약정체결일 전 이미 집행된 금액에 대해 사후보전 방식 불가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내 타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내용으로 중복참여 불가
- 「2023년 협동조합 규모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동일한 협업모델로 참여(신청)가 가능하나, 세부사업 주제 및 지원내용이 달라야 함
-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4. 선정절차 및 내용

○ (선정절차) 1차 서면심사 → 2차 대면심사 → 최종 선정

서면심사(1차)	대면심사(2차)	최종 결과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여부 검토 후 심사 ·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발표 · 질의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모델 4건 선발
4. 4.(목) ~ 4. 5.(금)	4. 9.(화)	4. 12.(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차 서면심사(서류)

- 심사일자: 2024. 4. 4.(목) ~ 5.(금)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3인 내외 구성
- 온라인 서면심사 진행
- 서류심사 결과 토대로 대면심사 대상 선정(모집 건수의 2배수 내외)

※ 1차 서류심사 전, 지원 자격 및 필수 제출서류 완비 여부 등 기본사항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 2차 대면심사(면접)

- 심사일자: 2024. 4. 9.(화)

- 심사장소: 경기도청 옛청사 신관(경기도 수원시 호원로1, 경기도청 옛청사 신관 3층)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4인 내외)를 구성하여 대면심사 진행
- 선정방법: 대면심사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종 심사 시 합산 평균 70점 미만 기업의 경우 선정하지 않으며, 동점 시 심사위원 내부 협의를 통하여 선정

○ 최종 결과발표

- 발표일: 2024. 4. 12.(금)

- 발표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 및 선정기업 개별공지(공문통지)

5. 선정기준

○ 평가항목 계획(안)

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 계획의 적정성·구체성	-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의 부합성 - 사업의 실현 비전 및 지향성 -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30점
사업 수행의 적합성·타당성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 추진 사업의 파급·기대효과	30점
기업의 잠재성 및 보유역량	- 사업 수익모델 개발 등 지속성장 가능성 -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성 및 혁신 노력	20점
사회적가치 확산 노력	- 협동조합으로서의 사회적가치 창출 노력도 -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 협력 수준	20점
합 계		100점

※ 최종 심사 시, 합산 평균 70점 미만의 경우 선정하지 않음

6. 평가 제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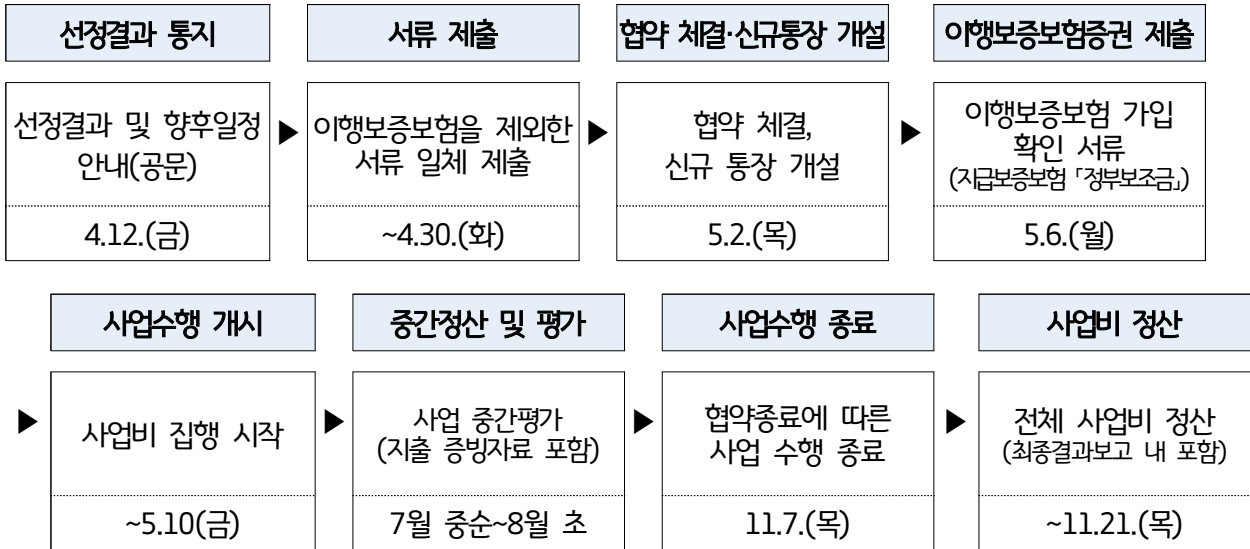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기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지원제외 업종: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유흥주점 등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사업목표와 결과 등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이미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법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기준

-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등

8. 사업비 지급절차

○ (지급절차)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비 신청 시 유의사항)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보조금 지급 시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필수로 사용하며 보조금 신청 전 **필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 기존에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에도 신규 개설 필요
- 법인수익금 계좌와 별도로 전용 보조금 계좌를 개설·관리하되 **반드시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기존 이용하던 통장 사용 시 혼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비는 수행기업의 지출결의 후 사경원의 승인에 따라 집행이 가능함
- (사업비 신청 서류) 공문, 교부신청서, 최종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통장 및 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이행보증보험증권

9. 사업예산 분류 및 내용

- 사업예산계획 수립 시, 아래의 예산 분류에 따라 예산을 책정해야 하며, 예산 분류 외 항목 책정 시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사업계획 상 예산 항목 선택 문의는 이메일(유선 연락X)을 통하여 사전 문의
- 월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사용은 **중간평가(7월) 전까지 사업비 총액의 최대 50%까지 사용 가능함(예산계획 시 반영)**

예산 분류	예산 비목	설명
일반 인건비 (사업비의 10% 이내)	전담인력인건비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의 전담인력 인건비 (근로형태 관계없음)
사업수행 인건비 (직접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의 20% 이내)	활동수당	사회서비스 직접제공을 수행하는 활동가에게 지급하는 수당 (최대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 시간 당)
자문성 인건비 (외부전문가 한정, 사업비의 10% 이내)	컨설팅비	외부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시 지급하는 수당
	자문비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시 지급하는 수당
	강사비	외부 전문 강사로부터 강의를 받을 시 지급하는 수당
일반수용비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단기성 임차비용(예) 장비, 작업장, 행사장, 차량
	재료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물품관리법에 의거,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은 구매 불가)
	용역비	직접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용역비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30% 이내)
	안전보험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외한 안전보험료
	사무용품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 비용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홍보성 비용, 책자·팸플릿 제작 등
	회의비	다과 및 식사를 포함한 회의 식대 1인 1식 기준 단가 15천원, 단순 다과구입은 1인 1식 기준 단가 7천원 (내부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 사용 불가)

○ (일반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 사업 전담인력(행정 업무) 인건비의 **합계**는 ‘**전체 교부 사업비의 10%**’ 한도 내에서 책정 및 집행 가능

※ 총괄PM은 전담인력과 겸임 불가

※ 전담인력, 총괄PM은 주관 협동조합 소속 내부인력만 참여 가능

○ (자문석 인건비) 컨설팅비, 강사비

- 자문석 인건비의 **합계**는 ‘**전체 교부 사업비의 10%**’ 한도 내에서 책정 및 집행 가능

- (강사비 지급 기준표) 일반강의·교육(단일행사 또는 전문가 일회성 특강 등)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Ⅱ)	최초1시간	40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20	
특강 (Ⅲ)	최초1시간	30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1시간	23	•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 전·현직4급(서기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12	
일반 (Ⅱ)	최초1시간	12	• 전·현직 5급(사무관)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10	
보조강사	1시간당	4	

- (컨설팅비 지급 기준표)

① 기타 경험 및 경력기준

등급	자격 및 경력 기준	단가(원)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자 컨설팅 능력이 있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정부출연(연) 재직자(선임급 이상), 해당 분야 컨설팅 경력보유자(경력 10년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사회적경제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유관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570,000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설팅 해당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유관기관 근무경력 보유자(경력 5년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440,000

② 학력 및 경력기준

등급	학력 및 경력 기준	단가(원)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570,000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440,000

③ 자격 및 경력기준

등급	자격 및 경력 기준	단가(원)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9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570,000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440,000

10. 사업추진 시 보고사항

○ 사업계획

- 시기: (최종사업계획)협약체결 전, (사업계획 수정)변경 시
- 내용: 추진일정, 예산사용 계획 등 양식 참고

○ 지출결의

- 시기: 사업비 집행 시(수행기업의 지출결의를 사경원에서 검토 후 승인함에 따라 사업비 집행 가능)
- 내용: 지출결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

○ 월간 보고

- 시기: 매월 10일(7월은 중간평가로 제외함)
- 내용: 전월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률 등

○ 중간 보고

- 시기: 7. 10.(수)
- 내용: 추진계획에 따른 진행사항 및 성과, 예산 사용 등
※중간 보고 및 평가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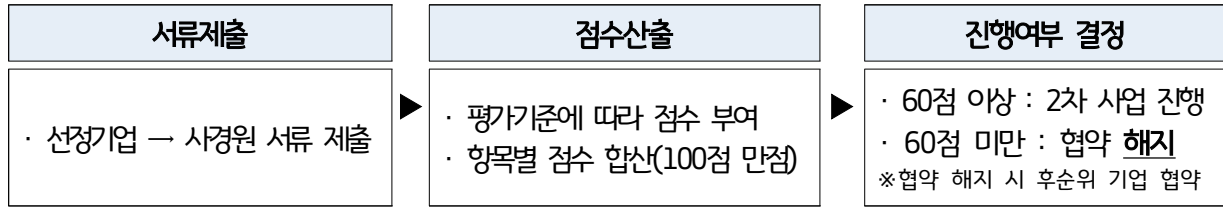
○ 최종 보고

- 시기: 11월 초(자세한 일정은 '11. 사업 최종평가' 참고)
- 내용: 사업계획 대비 집행 내용, 성과, 예산집행 결과 등

※ 이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요청하는 사업점검에 필요한 기타 사항

11. 사업 중간평가

○ 중간평가(사업 진행 여부 판단) 방법(안)



○ 판단 기준 자료: 월별·중간보고 및 붙임 서류 일체

○ 평가 기준(안)

① 목표 달성: 사업계획 대비 정량·정성 목표 달성

평가기준	평가	구간	배점
목표 대비 달성률	우수	100% 이하 ~ 90% 이상	50
	양호	90% 미만 ~ 80% 이상	40
	보통	80% 미만 ~ 70% 이상	30
	미흡	70% 미만 ~ 60% 이상	20
	매우 미흡	60% 미만	10

② 예산 집행: 교부된 사업비의 예산계획 대비 집행률 등

평가기준	평가	구간	배점
월별 예산집행계획 대비 집행률	우수	100% 이하 ~ 90% 이상	30
	양호	90% 미만 ~ 80% 이상	25
	보통	80% 미만 ~ 70% 이상	20
	미흡	70% 미만 ~ 60% 이상	10
	매우 미흡	60% 미만	5

③ 자료제출: 월간·중간보고서, 별첨 자료 및 지출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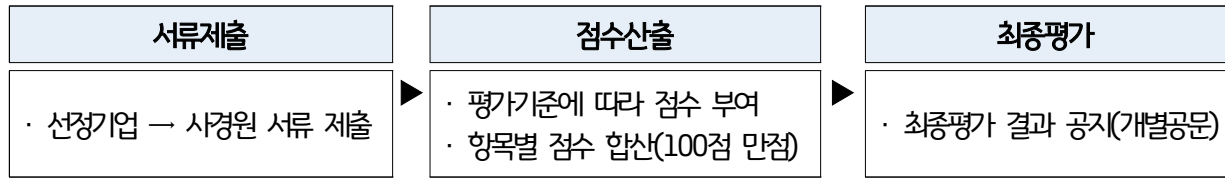
평가	평가기준	배점
우수	지각제출 0건	20
양호	경미한 지각제출 5건 이하	15
보통	경미한 지각제출 10건 이하	10
미흡	경미한 지각제출 10건 이하 또는 심각한 지각제출 3건 이하	7
매우 미흡	경미한 지각제출 10건 이상 또는 심각한 지각제출 3건 이상	5

※경미한 지각제출: 근무일 기준 2일 이내, 심각한 지각제출: 근무일 기준 5일 이상

※지각 제출의 경우, 지각 일수 및 횟수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12. 사업 최종평가

○ 최종평가 절차(안)



○ (판단 기준 자료) 최종사업결과보고 및 붙임 서류 일체

○ 평가 기준(안)

① 목표 달성: 사업계획 대비 정량·정성 목표 달성

평가기준	평가	구간	배점
목표 대비 달성률	우수	100% 이하 ~ 95% 이상	50
	양호	95% 미만 ~ 90% 이상	40
	보통	90% 미만 ~ 85% 이상	30
	미흡	85% 미만 ~ 80% 이상	20
	매우 미흡	80% 미만	10

② 예산 집행: 교부된 사업비의 집행률 및 집행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	구간	배점
월별 예산집행계획 대비 집행률	우수	100% 이하 ~ 95% 이상	30
	양호	95% 미만 ~ 90% 이상	25
	보통	90% 미만 ~ 85% 이상	20
	미흡	85% 미만 ~ 80% 이상	10
	매우 미흡	80% 미만	5

③ 자료제출: 결과보고서 별첨 자료 및 증빙자료의 완성도

평가기준	평가	기준일	배점
지각제출 (근무일 기준, 누락된 증빙자료가 없어야 함)	우수	0일	20
	양호	1일	15
	보통	2일	10
	미흡	3일	7
	매우 미흡	4일	5

※ 상기 평가 기준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평가 결과 '50점 미만' 시 차년도(2025년) 협동조합 성장지원 사업 참여 불가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타 사업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결과보고 제출기한)

- 1차 사전제출: 2024. 11. 14.(목)
- 2차 최종제출: 2024. 11. 21.(목)

○ 결과보고 시 제출 서류(안)

연번	항목
①	사업결과보고서(양식 제공)
②	정산보고서(양식 제공)
	별첨 1. 회계장부(양식 제공)
	별첨 2. 통장입출금내역(실물통장 사본)
	별첨 3. 각 비목별 지출 증빙자료

※ 제출 내용은 선정 후 상세 안내하며,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13. 상담데이 추진

- (목적) 본 협업화 지원사업 사업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지원사업 적절성 여부 등 상담을 진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목적에 부합한 신청을 지원

※ 상담범위는 본 협업화 지원사업 내용에 한하며, 협동조합 설립·운영 등의 일반 상담은 해당하지 않음.

- (대상) 「2024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
- (일시) 2024. 3. 26.(화) ~ 28.(목) 예정
- (장소) 경기도 3개 권역별 추진(의정부, 하남, 수원)
- (상담데이 안내문자 신청) <https://forms.gle/f9dxnK7CRjodUXnc8>

13. 문의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연계팀 홍하나 주임
- ☎031-258-3286 / hanahong@gsic.or.kr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024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 신청 서식 1부. 끝.